

1.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467호, 2021.9.24. 공포, 2022.3.25. 시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업무가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규정됨에 따라, 현행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된 업무 중 사회서비스 품질 관련 정보공개 및 품질관리 업무의 위탁기관을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공동활용의 근거를 마련함과 함께,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강화 및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대상 폭행, 성범죄 등 종사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에 대한 엄중 처분 등의 내용으로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의 정보공개 주체 변경(안 제18조 제1항6호 삭제, 제5항 신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결과공개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 나.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수행기관 변경(안 제19조제2항, 제4항, 제5항)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업무 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함.

- 다.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시 비대면 방식 제공 허용(별표1. 제1호가목3))
이용자의 시설방문을 통해 지원상담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감염병 대유행 등으로 대면 방식의 지원상담이 어려운 경우, 유·무선, 화상 통신, 컴퓨터 등을 통해 시설 외부의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라.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 근거 마련(별표1. 제4호가목 단서조항 삭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인력 및 유휴인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공동활용을 제한한 단서조항 삭제함
- 마. 종사자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강화로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별표 2. 사목)
이용자에 대한 종사자의 폭행·상해, 성희롱·성폭력 위반행위에 대해 처분기준 상향 및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및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책임 강화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평
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각각 “중앙사
회서비스원”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원상담서비스: 제공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방문한 이용자에게 건강관리,
인지발달 또는 사회적응 등에 대한 지도, 지원 및 상담 등을 하는 서비스
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선·무선·화상
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외부에 있는 이용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별표 1 제4호가목 단서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그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을 “최근”으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
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소속 종사자가 사회서비 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 우	법 제23조 제1항제6호				
---	------------------	--	--	--	--

별표 2 제2호에 사목1) 및 사목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용자에게 폭행,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취소	
2) 이용자에게 성적 수치심 을 주는 성희롱 또는 성폭 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제2
항·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 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u>사회서비스의 품질 평가 결 과에 관한 사항</u> 7. (생 략) ② ~ ④ (생 략) <u><신 설></u>	제18조(제공자에 관한 정보 공개)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u><삭 제></u>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u>⑤ 중앙사회서비스원은 법 제29 조제1항에 따라 사회서비스의 품질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을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 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공개해야 한다.</u>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생 략) ② <u>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 제 30조제1항에 따라 제공자가 제 공하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3 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해야 한</u>	제19조(사회서비스 품질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u>중앙사회서비스원</u> ----- ----- ----- -----

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u>한국사회보장정보원</u> 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평가시행연도 1월 31일까지 평가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평가시행 차년도 1월 15일까지 평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④ <u>중앙사회서비스원</u> ----- ----- ----- ----- -----.
⑤ <u>한국사회보장정보원</u> 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제공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u>중앙사회서비스원</u> ----- -----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